

일본의 공제회 -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정보신청기관 : 군인공제회

일본은 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 공제회'와 같은 조직은 없다. 다만 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는 자위대가 있다. 자위대원의 경우에는 방위성공제조합(防衛省共濟組合)¹⁾에 가입하게 된다. 이 방위성공제조합은 일본의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에 가입하게 되고,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를 통하여 채권(債券) 발행 등의 대부업(貸付業) 및 자금운용을 하게 된다.

I. 일본의 국민연금 및 공제조합

1. 일본의 국민연금

일본의 국민연금은 일본 내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강제 가입해,

노령·장해·사망의 보험사고에 해당했을 때에 「기초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연금에 가입해 매월 납입하는 경우를 「국민연금」이라고 하지만, 연금을 받는 경우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노령기초연금, 장해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과부연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불린다.

일본의 국민연금법은 1959년에 제정되었다. 적용 사무는 1960년 10월부터, 보험료 징수는 1961년 4월부터 개시되었다. 이것에 의해서, 일본은 전 국민이 연금제도에 가입되게 되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2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가 국민연금(기초 연금)으로, 이것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고, 2단계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이 된다. 2단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하면 회사원이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이 공제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후생연금의 경우 보험료의 반



1) <http://boueikyosai.or.jp/index.php>.

액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공무원 공제의 경우 보험료의 반액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2. 공무원공제제도

공제제도는 3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①국가 공무원이 가입하는 국가 공무원 공제, ②지방공무원이 가입하는 지방공무원 공제, ③사립학교의 교직원 이 가입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가 있다.

만약, 자신의 직업 경력이 회사원과 공무원 양쪽 모두 있는 경우는, 요건이 되면 노후의 연금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양쪽 모두가 지급되게 된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사회보험청과 공제조합에 각각 청구해야 한다.

〈그림 1〉 공제연금의 개요



최근 있었던 일본의 정권교체 이전에 당시의 여당은 공제 연금과 후생연금을 앞으로 일원화 하도록 결정하였다. 2010년을 목표로 공제 연금을 폐지해, 후생연금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연금도 포함한 모든 연금 제도의 일원화를 주장하였지만, 우선 앞

에서 말하는 2단계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던 당시 여당의 계획대로 일원화가 될 것이라는 예상 이 지배적이다.²⁾

II.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와 방위성 공제조합

1.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일본에는 국가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조합의 연합 조직으로,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가 있다.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는 국가공무원의 연금, 복지사업 업무를 가입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의 주된 사업 내용은, 장기급부사업과 복지사업이었다. 장기급부사업은 퇴직이나 장해, 사망 등의 경우의 연금 지급, 연금 재정에 관한 수리 계산, 연금의 재원 운용, 각 부처의 담당자에 대한 연수, 연금 수급자의 상담 등 의무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사업으로는 의료시설의 운영, 숙박시설의 운영, 주택, 개호의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방위성공제조합

방위성공제조합은 자위대원, 방위성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이다. 이 조합은 조합원



2) <http://allabout.co.jp/finance/nenkinreceive/closeup/CU20061215A/>.

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직무의 능률적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일본의 경우 자위대에 근무하게 되면 방위성공제조합³⁾에 가입하게 된다. 2007년 1월부터 '방위청공제조합'은 '방위성공제조합'으로 개칭되었다. 방위성공제조합은 본부와 자위대 주둔지에 지부를 두고 있다.

방위성공제조합은 국가 공무원의 연금 사업이나 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방위성공제조합의 사업내용은 단기급부사업, 장기급부사업, 복지사업 등이 있다. 단기급부사업으로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병, 부상, 재해 등에 관한 급부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급부사업으로는 조합원의 퇴직 공제 연금, 장해 공제 연금 등에 관한 급부를 실시한다. 복지사업으로는 조합원의 건강 관리,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촉진, 병원의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물론 방위성공제조합도 국가공제조합연합회에 속한 공제조합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군인공제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제조합연합회에 속하는 방위성공제조합이 있고, 방위성공제조합 혹은 국가공제조합연합회가 각각 조합원의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Ⅲ. 관련 법률과 자금운용

1. 자금운용에 관한 근거규정

일본의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⁴⁾이 전술한 공제조합들의 근거법이다. 또한 동법은 '자위관의 퇴직공제연금의 지급개시연령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자위관에 관한 조문도 포함하고 있다.

동법 제19조(자금의 운용)은 "조합의 업무상 여유금의 운용은 정령(政令)에서 정한 바에 의해, 사업의 목적 및 자금의 성질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연합회의 적립금 등의 운용의 기본방침)은 "연합회는 적립금 및 장기급부의 지불상의 여유금('적립금 등')에 대해서, 그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5조의2(장기급부에 충당해야 할 적립금의 적립 및 운용) 제1항은 "연합회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장기급부(기초연금 거출금 및 제102조의2에 규정하는 재정조정 거출금을 포함한다.)에 충당해야 할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항은 "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한 적립금(기초연금 거출금과



3) <http://boueikyosai.or.jp/index.php>.

4) 昭和三十三年五月一日法律第二百二十八号.

관련되는 적립금을 포함한다.)의 액중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재정용자자금에 예탁해 운용해야 한다.”⁵⁾고 규정하여 채권발행 등의 자금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8조(자금의 운용)은 업무상 여유금을 ①은행 기타 재무 대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금, ②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의 금전신탁으로 원본 보전의 계약이 있는 것, ③국채, 지방채 기타 재무성령(財務省令)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밖의 ‘조합의 업무상의 여유금의 운용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재무성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9조의3(연합회 적립금 등의 운용)은 “연합회의 적립금 등은 ①은행 그 외 재무 대신의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금, ②신탁회사 또는 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의 신탁, ③전호의 신탁의 종료 또는 일부의 해약에 의해 취득한 것 중 금전 등의 것, ④국채, 지방채 그 외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부동산 (미리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⑥조합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피보험자의 소정의 시기에 있어서의 생존을 보험금의 지불 사유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 ⑦재정용자 자금에의 예탁, ⑧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로 운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규칙 제12조(자금의 운용)은 업무상의 여유금을 장기 은행예금으로 하는 것, 재무성령으로 정한 유가증권(특별 법률에 의한 법인 발행 債券, 社債券, 公社債投資信託, 貸附信託의 受益證券, 외국 정부 지방공공단체 특별법에 의해 성립된 법인 또는 국제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자금운용의 양태

국가공무원공제연합회는 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에 근거해, 공제조합의 ‘적립금등의 운용의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적립금 및 장기 급부의 지불상의 여유금(‘적립금 등’)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연합회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다.⁶⁾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는 그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①일본내 채권운용 매니저, ②국내 주



5) 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 第三十五条の二(長期給付に充てるべき積立金の積立て及び運用)連合会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長期給付(基礎年金及出金及び第百二条の二に規定する財政調整会出金を含む⁶⁾)に充てるべき積立金を積み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
2 連合会は‘前項の規定により積み立てた積立金(基礎年金拠出金に係る積立金を含む⁶⁾)の額のうち政令で定める金額を’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財政融資資金に預託して運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적립금 등의 운용 기본방침, http://kkkr.or.jp/shikin/basic_policy.pdf(2008. 4.1.).

식운용 매니저, ③외국 주식운용 매니저 등을 두고 있고 증권거래 및 자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기본 포트폴리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⁷⁾ 특히 연합회 내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어 자산 운용, 대부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⁸⁾

또한, 매년 연금적립금 등의 운용상황을 정리하고 있다.⁹⁾ 2008년 6월 ‘연금적립금 등의 운용상황’에서는 매년 대부금의 채권유동화·증권화에 대하여, ①오랜 장기고정금리(최장 30년)에서의 금리변동 위험의 회피 또는 경감이 필요한

것, ②대부금,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은 자산운용 관점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¹⁰⁾

손 형 섭

(헌법재판소 연구원, 외국법제조사위원)



7) 연금자금운용에 대하여는, <http://kkcr.or.jp/shikin/index.htm>(2009. 5.13.방문) 참조.

8) 대부제도의 개정에 대하여(의견서), <http://kkcr.or.jp/shikin/report150128-2.pdf>(2009. 5.13. 방문).

9) 연금적립금등의 운용상황 http://kkcr.or.jp/shikin/2008_unyou.pdf(2008. 6.).

10) 연금적립금등의 운용상황 http://kkcr.or.jp/shikin/2008_unyou.pdf(2008. 6.), 17면.